

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
(구립도서관) [시행 2013. 5.24.]

(제정) 2010.03.25 조례 제550호
(일부개정) 2013.05.24 조례 제714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구립도서관
관리책임전화번호 : 241-740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3. 5. 24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작은도서관”이라 함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 <개정 13. 5. 24>
2. “도서관자료”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제공·열람·대출
2.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3.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

제4조(공간 및 위치)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. <개정 13. 5. 24>

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,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. <개정 13. 5. 24>

제5조(설비 조건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건물면적: 33제곱미터 이상 <개정 13. 5. 24>
2. 열람석: 6석 이상 <개정 13. 5. 24>
3. 도서관자료: 1,000권 이상 <개정 13. 5. 24>

제6조(지자체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·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, 설비, 자료 구입, 인건비,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,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13. 5. 24>

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13. 5. 24>

제7조(운영) ① 작은도서관에는 “작은도서관 운영자”를 두며,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·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13. 5. 24>

②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13. 5. 24>

③ 삭제<13. 5. 24>

제8조(자치운영위원회)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자는 지역주민,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13. 5. 24]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13. 5. 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